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 2019 - 13호

「부산지방우정청 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확대운영」 계획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제도 운영 우체국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취급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 배치 등으로 농어촌 지역 등에 소재한 우체국의 사고예방 및 직원들의 휴식시간 보장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2인이하 관서 및 농어촌지역 3인관서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 운영하려는 것임

2. 점심시간 휴무제도 도입 운영관서 · 운영시간 및 시행일

가. 2인이하 관서 시행 현황 붙임 참조

구 분	기시행	운영시간 변경	확대시행	합 계	비 고
운영국수	37국	3국	4국	44국	

나. 3인이하 관서 시행 현황 붙임 참조

구 분	기시행	운영시간 변경	확대시행	합 계	비 고
운영국수	80국	1국	16국	97국	

다. 시행일 : 2019. 4. 1.(월요일)자

3.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1-507-6176
- E-mail : duddjs3@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